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8.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명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구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장기 기증 장려 조례 및 최근 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항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장기기증 등록자(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0. 7. 21일부터 8.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0. 8.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장기기증 등록자(기증자), 병역 명문가, 다자녀가정의 달서가족문화센터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059
----------	---------

제출년월일 : 2020. 8. 24.

제출자 :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구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장기 기증 장려 조례 및 최근 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항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 장기기증 등록자(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안 제10조 제5항 및 제7~9항)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0. 7. 21. ~8. 10.)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해당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기족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u><신 설></u>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u><신 설></u>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u><신 설></u>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
6. (생 략)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8. 4.>]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종합민원과의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제9조(예우)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 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세대주를 말한다.
3. “입학준비금” 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 이란 달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아이조아카드”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2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